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디지털 전환 및 미래교육 등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(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-

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1. (삭제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8조(시설·자료의 기준 등)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·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<u>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.</u> 2.·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8조(시설·자료의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<u>(삭제).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	
연 락 처	044-203-6997